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4. 2. 20(화) 10:00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62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2. 2.
- 라.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736,796,866천원(일반 711,333,570천원 특별 25,463,29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1회추경 (안)	비 고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736,796,866	735,718,162	734,975,982	742,180	1,078,704	
일반회계		711,333,570	710,254,866	709,512,686	742,180	1,078,704	
특별회계		25,463,296	25,463,296	25,463,296	0	0	
	의료급여기금	585,000	585,000	585,000			
	주차장	24,878,296	24,878,296	24,878,296			

4. 교통건설국 추경예산안

(단위:천 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교통건설국		42,067,999	41,557,999	510,000	1.23 %
교	통 행정과	1,901,906	1,901,906	0	0.00 %
주	차 관리과	24,878,296	24,878,296	0	0.00 %
건	설 행정과	279,165	279,165	0	0.00 %
도	로 과	8,004,325	8,004,325	0	0.00 %
치	수 과	7,004,307	6,494,307	510,000	7.85 %

5.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 원)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1회추경(안) ②
치수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 위치 : 범안로15길27-15, 독산로58길 45-71 -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량	1,410,000	900,000	510,000

○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 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최종 예산액	기정액	1차 추경(안)
계				641,789	641,789	0
1	주차관리과	불법주차단속	-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s-TOP) 및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분담금	564,752	541,789	22,963
2	주차관리과	예비비	- 자치구 분담금 세출예산 편성	77,037	100,000	-22,963

5. 검토의견

○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기정액(415억 5,799만원)에서 5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420억 6,79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5.71%에 해당됨.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가. 치수과

기정액(64억 9,430만원)에서 금회 5억 1,000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 5억 1,000만원 증액

라.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은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운영 비용 자치구 균등 분담에 따라 2,296만원을 주차관리과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함

-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소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334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